

2025년도 한국전력기술(주)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전력기술(주)·한국표준협회는 창업·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도 한국전력기술(주)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지원기간) 기업 선정 통지일부터 '25.12월까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

구분	세부 내용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자격증빙) 지원 자격별 아래 증빙자료 제출

구분	세부 내용
창업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택 1 가능)
벤처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벤처기업확인서**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 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 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② 지원내용

□ 사업화·고도화 자금(기업당 10백만원)

-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 기업 / 총 150백만원 지원

③ 신청 및 선정평가

□ (신청기간) '25.7.16.(수) 9시부터 ~ '25.7.30.(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스캔본 E-Mail 제출 또는 상생누리 업로드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한국전력기술(주)	이지윤 사원	054-421-5256	lly3718@kepc0-enc.com
한국전력기술(주)	신채은 사원	054-421-3748	rloch@kepc0-enc.com
한국표준협회	조성은 팀장	02-6240-4787	startup@k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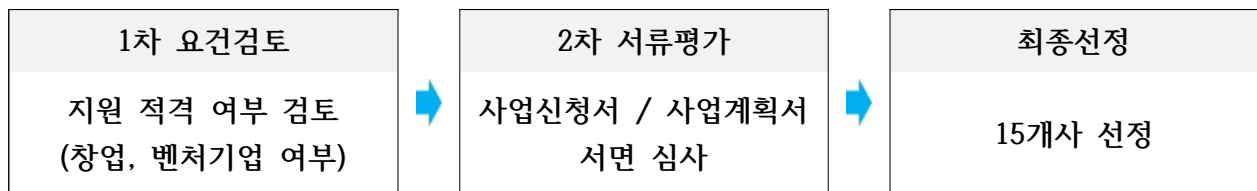
□ 제출서류

- | | |
|-----------------|------------------------|
| ① 사업신청서 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② 사업계획서 1부 | ⑦ 신청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③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⑧ '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⑨ 가점 관련 증빙자료 1부 |
| ⑤ 자격증빙 해당자료 1부 | |

* 창업·벤처기업 확인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선정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적합성	40	- 지원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 지원 분야(소비재, 산업재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사업성	30	- 사업추진 전략,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능력 등 -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활용 가능성 등
기술성	30	- 신규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구체적인 실행 전략, 모방 가능성 및 방지 전략 등
가점	10	-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및 원자력 분야 기업 여부

붙임 3.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양식

참여 중소기업 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①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성과관리	- 참여제한 대상 여부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지원 효과 및 성과 조사 - 사업 연계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활용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기업정보) 기업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 ○ (인)
 대표자 ○ ○ ○ (인)

* 유의 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